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제95조제1항 관련)

사 유	제한 기간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이내
연구개발의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